



재해 개요

- 2023. 3. 25.(토) 12:58경, 전북 □□시 △△동 소재 「○○○」 공사 현장에서, ○○ 소속 재해자가 지상3층 슬라브* 거푸집 상부에서 전이보** 거푸집 바닥(높이≒2.1m)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

* 슬라브 :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바닥판

** 전이보 : 건물 상층의 골조를 하부에서 별개의 구조형식으로 전이하는 형식의 큰 보



재해 발생 원인

● 떨어짐 방호 조치 미실시

- 거푸집 단부 및 개구부 등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, 추락방호망 또는 덮개,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떨어짐 방호조치를 미실시

● 통로 설치 부적정

- 작업장 내 가설통로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였으나, 발판 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등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미설치



재해 예방 대책

● 떨어짐 방호 조치 실시

- 거푸집 단부 및 개구부 등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·추락방호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하며, 안전난간·추락방호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 및 착용하게 하고,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함

● 통로 설치 기준 준수

- 슬라브 또는 보 거푸집 설치 시 단부 및 개구부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, 작업발판으로 가설 통로를 사용하는 경우 발판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견고하게 고정하는 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
● 위험성평가 작성 및 이행 철저

- 위험성평가를 통해 거푸집 단부 및 개구부 등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사전에 파악하고,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 및 이행하여 안전한 방법과 상태로 작업하여야 함

※ 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·직영·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